

「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」 안내 및 참가자 모집 공고

법무부는 난민심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난민통역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5월 19일

법무부장관

1. 난민전문통역인

-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(난민법 시행령 제8조)

※ 위촉기간 3년 재인증 절차를 통해 재위촉 가능

- 난민전문통역인은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 풀(pool) 형태로 관리되며 난민 심사 시 우선적으로 통역업무를 수행

2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

난민심사의 통역 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하여 난민통역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

※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 수행기관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

3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 절차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순 서	과 정	시 기	내 용
1	통역능력선별시험 (온라인)	'25. 6월	언어별 듣기·말하기 능력 평가
2	수준별 맞춤형 교육 (온라인)	'25. 7~8월	선별시험 결과에 따라 상·중·하로 구분하고 언어능력별로 통역 기법, 통역 윤리, 기초법률 및 지식 등 교육
3	인증시험 (오프라인)	'25. 9월	대화통역, 순차통역, 시역, 배경지식 및 윤리 능력 평가
4	보수교육	'25. 10~11월	난민통역을 위한 문화 이해, 난민통역을 위한 전문언어 숙달 등으로 구성
5	위촉	'25. 12월	인증시험 합격자를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

4.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

※ 참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모집분야	담당업무	모집인원	모집언어
난민전문통역인	난민심사 관련 통역·번역	언어별 00명	제한 없음

5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참가 자격

- ☐ 한국어와 외국어 간 통역·번역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
(다만, A계열(외무·공무·협정), B·C계열(단기)·G계열(기타)의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제외)
- ☐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통역·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

6.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참가 신청

- ▶ 신청 기간: '25. 5. 26.(월) ~ 6.8.(일)(2주)
※ 참가 신청자 수에 따라 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- ▶ 신청 사이트 : moj.passon.co.kr
※ 5.26.(월)부터 신청 가능
- ▶ 문의처: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
(refugeeinterpreting2025@gmail.com, 02-2173-3977)

- ☐ 신청방법: 지원서 신청 사이트의 지시사항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

7. 기타

- 현재 활동 중인 난민전문통역인은 기존에 인증받은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추가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.
- 올해 인증기간 만료 예정인 통역인은 인증제에 참가하여 인증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올해 인증기간 만료 예정인 통역인의 경우, 통역능력 선별시험과 수준별 맞춤형 교육은 면제되며 최종 인증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특정 언어에 참가자가 집중될 경우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 및 시험 안내 등 인증제 시행정보는 e-mail 등으로 공지·안내하니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, e-mail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, e-mail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인증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